2025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1. **소집 통지일 :** 2025. 06. 09 (월)

2. **개 최 일 시 :** 2025. 06. 18 (수) 15 : 00

3. **개 최 장 소 :** 다비다의집 5층 소강당

4. **총 임 원 수 :** 이사 8명, 감사 2명

5. **참석 임원수 :** 이사 6명
 윤 대표이사, 박 이사, 임 이사, 박 이사, 이 이사,
 양 이사

6. **의 안 :**
 1. 법인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2. 자강의집 안 원장 연임 심의
 3. 법인임원(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 심의
 4. 법인임원(이사) 선임 심의
 5. 한일노인사랑 원장 선임 심의

의사경과 요령 및 의안의 결의 결과

의장 윤 : 날씨가 부쩍 무더워진 요즘, 임원 여러분들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법인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들이 출석하였으므로 2025년도 제5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법인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법인사무국 과장은 나와서 법인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무국 과장 윤　　: 미리 올려드린 법인 운영관리규정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고자하는 조문은 운영규정 제3조(적용시설) 제6항입니다. 제6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천성보호작업장의 명칭을 장애인일터함께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시설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업방향 및 변화, 시설의 더 나은 이미지 구축 및 새로운 사업의 진입에 맞춰 새롭게 시설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여 대덕구에 변경신고 하였고, 법인운영규정에 적용코자 합니다.
(법인 이사 나눠드린 자료 자세히 살펴봄)

의장 윤　　: 법인운영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사 박　　: 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진입에 맞춰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사 임　　, 이사 양　　: 재청합니다.

의장 윤　　: 네, 의견을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이의 없다 답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1호 의안) '법인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제2호 의안) '자강의집 안　　원장 연임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법인 사무국 과장은 의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사무국 과장 윤　　: 법인 산하 노숙인복지시설 자강의집 안　　원장(1965.04.08)의 임기가 오는 202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의 임기로 법인 운영관리규정(인사규정) 제2장 13조(임용권자) 1항에 따라 연임 승인을 요청 합니다.

의장 윤　　: 법인 운영관리규정(인사규정) 제2장 13조(임용권자) 1항에 의거 '산하시설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하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설장으로써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 왔고, 법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에 안 원장은 임기 3년 연장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 임 : 오랜기간동안 노숙인복지시설 자강의집 시설장의 업무를 맡아오셨기에 누구보다 노숙인시설 운영에 적합하며, 그동안 시설장 업무를 잘 수행해 오셨기에 임기연장에 동의합니다.

이사 이 : 임 이사 의견에 재청합니다.

의장 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이의 없다 답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2호 의안)'자강의집 안 원장 연임 심의'**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제3호 의안) '법인임원(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윤 : 우리법인 임원(감사)이신 신 감사님의 임기가 오는 2025. 0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7항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은 시청에 외부감사 추천 요청공문 (2025.04.21 천성원-282)을 보내고, 시청에서 감사후보 추천 통보공문(2025.04.29 시청 장애인복지과-6707)을 회신 받았습니다. 감사후보자는 현재 법인에 임원(감사)으로 계신 신 후보자님이시며, 신 후보자님께서 감사직을 맞아주실 의양이 있으시다는 확답을 듣고, 범죄경력조회를 실시(2025.06.12)한 결과 성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에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아

임원 자격의 제한은 없었습니다. 감사후보자의 이력은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신 감사후보자의 선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자 격	범죄경력조회
신	1966.11.09	신 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해당자료없음

이사 박 : 신 후보자님께서는 2년 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해 오셨기에, 감사로 선임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사 박 : 박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사 양 , 이사 이 : 재청합니다.

의장 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 감사후보자 선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이의 없다 답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3호 의안) '법인임원(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 심의'**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제4호 의안) '법인임원(이사) 선임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윤 : 현재 우리법인에 임원으로 저를 포함한 이사 8명과 감사 2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에 천성원에서는 이사 3명을 추가 선임하여 이사 수를 11명으로 증원하여 법령상 최소 기준을 충분히 상회하여 결격 및 결원 상황에 대비하고,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부이사의 선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의뢰하여 3배수로 추천받아 그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에 따라 외부추천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외부추천이사를 요청, 현재 3배수(3명)의 외부추천이사의 명단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미리 나눠드린 자료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 받은 외부이

사명단 3명을 살펴보시고, 그 중 1명을 외부이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사 모두 명단을 자세히 살펴 봄)

이사 이 : 외부추천이사 명단 중 대전장애인양궁협회 회장직을 맡고계신 김 님을 이사로 추천합니다. 김 님은 2013년 대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현재 대전장애인양궁협회 회장까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리더십 능력으로 우리 천성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사 양 : 이 이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장 윤 : 외부추천이사 중 선정해 주신 대전장애인양궁협회 회장 김 님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이사님, 양 이사님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이사 임 : 네, 대전장애인양궁협회 회장 김 님을 이사로 선정하는 의견에 재청합니다.

의장 윤 : 그럼이어서 새로운 이사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사 박 : 이사님으로 오랫동안 천성원 산하 대전원명학교에서 근무했고, 현재 천성원 산하 장애인일터 함께 원장직을 맡고 계신 노 원장을 추천코자 하는데,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소양을 갖추어 법인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사 박 : 이 님을 추천합니다. 이 님은 매구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금의 운용, 회계처리, 재무 분석 등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법인의 재정 건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장 윤 : 네, 이사님들께서 2명의 이사후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사님들

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이사 양 : 각각의 이사님들께서 추천하신 노 님은 오랜 복지분야 경험을 천성원 발전을 위해 써 주시리라 생각되며, 이 님은 재무 및 회계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법인에 도움을 줄 분으로 보여, 두 분 모두 법인의 이사직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리라 믿기에 추천에 재청합니다.

이사 임 : 노 님은 천성원의 특수관계인으로 알고있습니다. 노 님을 이사로 선임하는데 특수관계인 비율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건지요?

의장 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 심의 건이 가결 될 경우, 우리 천성원의 이사 수는 11명이며, 그 중 특수관계인은 2명으로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사 임 : 네, 그렇군요 신임 이사 3명 중 1명이 특수관계인임에도 전체 이사 정수의 5분의 1로 법적 제한을 준수하였기에 노 님의 이사 선임에 대해 찬성합니다.

의장 윤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년(2025.07.01-2028.06.30)동안의 임기에 장애인일터함께 원장 노 님, 이 님의 선임, 대전장애인양궁협회 회장 김 님을 외부이사로 선임함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이의 없다 답함.)

성 명	생년월일	최종 경력	범죄경력조회
노	1969.12.28	장애인일터함께 원장	해당자료없음
이	1969.04.24	경일감정평가법인 대전지사	해당자료없음
김	1959.12.11	대전장애인양궁협회 회장	해당자료없음

의장 윤 : 이의가 없으므로 **(제4호 의안) '법인임원(이사) 선임 심의'**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제5호의안) '한일노인사랑 원장 선임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한일노인사랑 원장으로 계신 전 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025.07.01일자로 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인 인사위원회에서는 실무자인 사회복지사 김 씨를 한일노인사랑 원장으로 추천하였고 금번 이사회에에서 한일노인사랑 원장 선임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의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지난 2025.06.16. 법인에서 김 씨에 대해 범죄경력을, 한일노인사랑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대전 대덕경찰서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되었고, 시설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2017.12.28일자로 한일노인사랑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한 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2021.02.01일자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성실한 근무태도 및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법인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에 김 씨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시설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 양 : 다년간 실무경험을 살려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김 씨를 한일노인사랑 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사 이 : 양 이사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사 박 : 재청합니다.

의장 윤 : 네, 의견을 모아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선임되는 시설장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에서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이의 없다 답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5호 의안) '한일노인사랑 원장 선임 심의'**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동의 후 폐회 선언하다. (폐회시간은 16:00)

위 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25년 6월 18일

사회복지법인 천 성 원

대 표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감 사 (인)

감 사 (인)